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5-208-191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재단법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5. 4. 23.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후원자 및 수혜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1)」(이하 '보호법')에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해당한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재단법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대표 홈페이지(www.woorifoundation.or.kr)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이하 '결산자료') 파일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장학생과 직원등 수혜자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등록하여 유출되었다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23.9.19.)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에대해 조사('23.11.1.~'24.4.17.)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홈페이지에 결산자료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장학생과 직원 등 수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업로드한 사실이 있다.

- 1) (유출 내용) 수혜자 8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2)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외부 신고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게시글 삭제 후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알리고('23.9.18.), 개인 정보 보호포털에 유출 신고('23.9.19.)

¹⁾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3.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결산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1차 '24.5.13., 2차 '25.3.18.)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1차 '24.5.29., 2차 의견없음)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²)(이하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²⁾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3」(이하 '안전조치 기준') 제6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담당자의 과실로 마스킹 처리 등 안전조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것은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³⁾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일부개정, 2021. 9. 15. 시행

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1.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만 원)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아. 법 제23조제2형	t • 제24조제3항 • 제25조제6항(법 제25조의2제				
4항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4제1항·	법 제75조	600	1 200	2 400
제29조 (법 제26	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2항제5호	600	1,200	2,400
위반하여 안전성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해당 하는 사항이 없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 처리자의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피해회복·피해확산 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결과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비영리법인 등(30%이내)', '조사협조(20%이내)', '자진시정(2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 금액(600만 원)의 70%(420만 원)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총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 만 원)			
위반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최종액(D) D=(A+B-C)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보호법 제75조제2항제5호	600	-	420	18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5년 4월 23일

위원장 김진환

위 원 김일환

위 원 김휘강